

☎ 보도일시: 2020. 3. 16.(월) 조간, ✧ 고용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인터넷 2020. 3. 15.(일) 12:00 이후> 과 장 최준하(044-202-7496)
☎ 총 4쪽 사무관 김송이(044-202-7497)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대응, 콜센터 등 재택근무 전환 시 인프라 구축비 지원된다 - 인프라 구축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한도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서울시 구로구 콜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코로나19) 사례에 대응하여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통상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상사설망(VPN)을 구입 또는 임차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부 여신금융업, 홈쇼핑 및 소셜커머스업체 등에서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구축 지원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 지원대상은 그룹웨어,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시스템, 가상사설망(VPN) 등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시스템 구입 및 임대 비용, 최대 3년간 클라우드 사용료·인터넷 통신료 등이다.
- 다만, 개인용 컴퓨터(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은 동일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를 보내거나 방문해서 제출할 수 있다.

* (온라인 접수)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2017년 이후) → 고용안정장려금 → 계획신고서 작성(제출)

○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 지원은 사업참여신청서를 제출한 이후에 설치하는 프로그램과 시설 등에 한하여 인정된다.

□ 한편, 중소·중견기업이 재택근무제를 도입하는 경우 이용 근로자 1인당 주 1~2회 활용시 5만원, 3회 이상 활용시 10만원의 간접노무비도 지원받을 수도 있다.

□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및 간접노무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김송이 사무관(☎ 044-202-749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개요

- (개요) 재택근무*를 활용하는 기업에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 지원

*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방식

- (지원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고용센터에 사업신청 및 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계획 인원의 50% 이상 재택근무 활용, ③사용의무기간(3년) 준수
- (지원내용)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지원시설에서 제외

< 지원대상 시설 >

종류	지원금 용도	지원방식
시스템 구축비	■ 정보시스템 - 그룹웨어, ERP, 기업 전용 이메일·메신저, 서버, 스토리지,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 보안시스템 - VPN 등 원격접속, 정보 유출 방지, 자료 백업 및 복구, 사용자인증 시스템 등 ■ 서비스 사용료(최대 3년 사용약정분) - 웹 기반의 ERP, 클라우드 사용료,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 취업규칙 변경, 제도 도입 컨설팅 비용 ■ 인사담당자 교육·훈련 비용	직접지원

※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 및 임차 비용은 지원 제외

참조 2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및 간소화 내용

1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 (개요)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 유형>

사차 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 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 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 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대상)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지원요건) ①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②근로계약서 작성(모든 유형) 및 취업규칙 등에 제도 마련(사차, 선택 해당) ③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지원내용) 근로자*의 주당 유연근무제 활용횟수에 따라 최대 1년간 520만원 지원

*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70명 지원(사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

<지원 기준>

기준	연간 총액		1주당 지급액	
	주 3회 이상	주 1~2회	주 3회 이상	주 1~2회
지원금액	520만원	260만원	10만원	5만원

2 지원절차 간소화 내용(2.25~코로나19 상황 안정 시까지 한시운영)

- (신속한 사업신청서 심사) 월 1회 대면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수시 심사
- (재택근무제 중병 완화) 카드·지문인식기,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근태관리 시스템 내역만 허용 →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한 근무 시작 및 종료시간 보고자료(캡처 등) 허용
- (지원근로자 확대) 신규채용 후 1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근로자, 신청 직전 최근 3개월 간 유연근무제를 사용 중인 근로자도 지원